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7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한지아 · 김재섭 · 박성훈
고동진 · 이상휘 · 김 건
서일준 · 우재준 · 김기현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 4. 8.부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가 미흡하여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분쟁 감정 · 조정절차의 신뢰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24년 기준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2,089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의료과오소송 817건으로 여전히 많은 의료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 소송 비용 등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

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제45조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공제조합 가입 의무가 없어 2024년 12월 기준 병·의원급 공제 가입자 수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을 규정하여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충분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사고의 사실, 인과관계를 심의 후 수사·기소를 진행하게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고자 함.

그 외 조정기일 확대, 조정사건의 조력제도 및 음부즈만 신설, 감정·조정결과 공개 등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책임보험·책임공제,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함(안 제5조의2).

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3).

라. 조정위원의 보다 공정한 임명절차 마련을 위해 조정위원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안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감정단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조정부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마. 의료분쟁 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위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정중재원이 감정위원에 대해 의료사고 감정 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바.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감정부에 의료인 감정위원을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제1호).

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신청의 경우 변호사 등이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료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아. 조 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서 송부 이후 새로

운 자료제출 등의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자.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해 조정준비기일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정·감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음부즈만을 운영하여 조정중재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 또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대체적 제도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중재원 정관 등에 반영함(안 제7조제8호 및 제8조제3호).

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청구인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등이 성립됨을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파.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을

심의하여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자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하.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발생 시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규정함. 필수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는 기소 제한 및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함(안 제46조의8부터 제46조의10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분만·소아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설치·운영하는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

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운영”을 “운영, 의료사고 예방교육의 실시”로 한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 예방교육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참여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3(의료사고의 설명 등) 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료사고 배상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사고 배상 지원

제20조제1항 본문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100명 이상 50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제25조제2항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300명 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에 관한 감정부의 구성,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감정위원 교육, 자격)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조 제8항 전단 중 “전원”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
료사고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의 발생원인인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8항 전단 중 “개시한다”를 “개시하며,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을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한”
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
금 의료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그 밖에 원장이 조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조력 대상 의료사고, 의료분쟁 당사자 조력의 내용, 절차, 조력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인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추가감정) 조정부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출석기일)”을 “(조정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출석기일”을 “조종기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조정준비기일 및 제4항에 따른 조정기일에 조정의 과정,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일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제1항 중 “조정조서”를 “조정조서, 조정기일조서”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조정·중재의 공개 등

제44조의2(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조정중재원장은 조정, 중재 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결과 공개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의 운영) ①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ombudsman(이하 “ombudsman”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중재원장은 ombudsman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4조의4(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국가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의료사고 보상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

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의료사고 보상청구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제가 된 조정 또는 중재 사건에서 제3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분쟁을 종결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4장의2(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46조의3(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

2. 의료사고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해당여부

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나. 투약 용량 또는 방법의 착오로 인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및 투약 대상자를 착오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다.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하여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라. 약제에 대한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마. 환자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바.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사.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환자를 감염시킨 경우

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심의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척·기피·회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사무국) 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46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의료인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등 소속 사법경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7(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8(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하거나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9(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10(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제45조의3부터 제46조의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관리 업무 위탁,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은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료사고의 설명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한 경과조치)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책임보험”이란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u><신설></u>	8. “책임공제”란 의료기관 개설자와 이 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u><신설></u>	9.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질환·심혈관·뇌혈관·분만·소아 등 생명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
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⑤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
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
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설치·운영하
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
사고 예방교육 및 제4항에 따
른 조정 참여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
----- 운영, 의
료사고 예방교육의 실시 ----

-----.

<신 설>

<신 설>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료사고로 인한 「형법」 제268
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
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3(의료사고의 설명 등) 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보건의료
인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보건의료기관개
설자등”이라 한다)는 의료사고
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
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
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
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의 충분한 설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
의료기관개설자등에 대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

	<u>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은 민·형사상 재 판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 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 로 할 수 없다.</u>
	<u>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의 설명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u>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 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 ①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8. <u>의료사고 배상 지원에 관한 사항</u>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업무)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손해배상금 대불</u>	3. <u>의료사고 배상 지원</u>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u>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u>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 - <u>100명 이상 500명 이내</u> ----- -----

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신설>

-----.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 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

<u><신 설></u> <u><신 설></u> ③ ~ ⑦ (생 략) 제23조(조정부) ① ~ ④ (생 략) ⑤ 조정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u>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3. <u>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4. <u>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u> ④ <u>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⑤ <u>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⑥ ~ ⑩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3조(조정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	--

<신 설>

2. ~ 4. (생 략)

⑥ ~ ⑧ (생 략)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생 략)

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
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촉한다.

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4.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신 설>

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300명
이상 1,000명 이내-----

-----.

③ -----
-----.

1. (현행과 같음)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
위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3.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에
관한 감정부의 구성, 운영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감정위원 교육, 자격)

제26조(감정부) ①·② (생략)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 3. (생략)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보건의료인은 제외한다)

④ ~ ⑥ (생략)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외국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감정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한
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
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의 의사전문의 자격이나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 <단서 신설>

2. 3. (생략)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감정부에 1명 이상의 상임 감정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⑪ ~ ⑭ (생략)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2명.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3. (현행과 같음)

⑧ -----
-----과반수
-----.

-----.

⑨ (현행과 같음)

⑩ -----
-----. 다만, 의료사고의 발생원인인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
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
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
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
하한다.

⑨ ~ ⑮ (생략)

<신설>

-----개시하며, 불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 -----
-----불응
하는 의사를 통지한-----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
중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하여금 의료분쟁의 당사자
를 조력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
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그 밖에 원장이 조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조력 대상 의
료사고, 의료분쟁 당사자 조력
의 내용, 절차, 조력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생략)

<신설>

제29조(감정서)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인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 -----

-----.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생략)

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

제30조(의견진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제3항-----

-----.

⑤ 제4항-----

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
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출석기일) ① 출석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30조의2(추가감정) 조정부는 새
로운 자료의 제출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분쟁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부의 직권으로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감정부
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른 조
정준비기일 및 제4항에 따른
조정기일에 조정의 과정,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기일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

- 조정조서, 조정기일조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3절 조정·중재의 공개 등

제44조의2(조정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조정중재원장은 조정, 중재절차 완료 후 의료분쟁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결과 공개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신 설>

<신 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의료분쟁 조정·중재
옴부즈만의 운영) ①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
만”이라 한다)을 둔다.

② 조정중재원장은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
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4조의4(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
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
른 의료행위로 사람이 사망하
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u><신 설></u>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보험 등 상품 설계,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관리 등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제44조의5(국가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의료사고 보상 청구인이 보상</u>
--	---

<신 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정중재원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의료사고 보상청구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 의료사고 보상심의의 전제가 된 조정 또는 중재 사건에서 제3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분쟁을 종결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장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46조의3(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료사고의 “필수의료행위”
관련 여부
2. 의료사고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

행위” 해당여부

가. 「의료법」 제24조의2제1

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
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나. 투약 용량 또는 방법의

착오로 인해 환자의 건강
을 해친 경우 및 투약 대
상자를 착오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다.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

하여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라. 약제에 대한 필수적인 과

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
고 약제를 투여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마. 환자의 혈액형과 일치하

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
해 환자의 건강을 해친 경
우

바.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확

인하지 않고 사용하여 환
자의 건강을 해친 경우

사.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

하여 환자를 감염시킨 경
우

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
니하거나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
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같은 법 제5
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
체에서 추천하는 5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
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
명

3. 법원행정처, 법무부 또는 대
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
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신 설>

속하는 공무원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 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심의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
나 있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
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종
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
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이나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경우

7.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
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과 동
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이나 단체에 속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심의위원회

<신 설>

<신 설>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제척·기피·회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사무국) 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제46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6(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의료인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심의 요청 전에 제5조의3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할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전에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등 또

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시·도경찰청장등 소속 사법경찰관 또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 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기소를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절차 완료 후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등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

<신 설>

<신 설>

되지 아니하도록 익명화 조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7(자료의 제공)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8(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신 설>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피해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
4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
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하거나 제44조의4제1항에 따
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
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9(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
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
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의
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
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
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개
설자등이 가입한 의료사고 손
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위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
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만,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 따

<신 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
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
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
다.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
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

른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
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10(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정상
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
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6
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
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부과·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부과·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⑧ 조정중재원은 제7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8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7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삭 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

<삭 제>

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 제2절에 따른 중재절
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